

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74 호

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전라북도의회 김영배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

1. 집회일시 : 2016년 10월 11일(화) 14시
2. 장 소 :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

2016 년 10 월 6 일

전라북도의회의장 황 현

